

공동의회 교회내규 개정 상정 안 (2024. 1. 7.)

조항	기존 내규	개정안
제10조 교인의 신급	교인의 신급은 당회가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입교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2세 미만)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3. 세례교인(입교인):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5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 (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제10조 교인의 구분 (총회헌법 2021.11.29 개정에 따른)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아동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 원입교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6세 이하)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3. 아동세례교인: (7-12세 이하)로서 세례를 받은 자 4. 세례교인(입교인):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3세 이상)자 또는 원입교인(13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사유: 총회 헌법 개정에 따라 교회내규 개정	
제19조 당회의 권한	제19조 당회의 권한 당회는 치리회로서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2. 본 교단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9조 당회의 구성과 권한 당회는 담임(위임)목사, 부목사, 시무장로와 언권회원으로 각 자치회장(제직회 서기, 청년회장, 총여전도회장, 총남선교회장, 권사회장, 안수집사회장)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2. 언권회원은 당회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3. 당회는 각 자치회장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적극 논의한다. 4. 당회는 열린 당회로 운영하고,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중계할 수 있다. 단, 장로, 집사, 권사 후보선정, 교인 및 직원에 대한 징계, 기타 당회가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다. 5. 본 교단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사유: 목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열린 당회 구성	

조항	기존 내규	개정안
제21조 당회장과 서기	3. 당회 서기의 임기는 2년이며, 연말 당회에서(임직 후 4년차부터)선임하고 1차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당회 서기의 임기는 2년이며, 연말 당회에서 선임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사유: 목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당회서기 임직연한 폐지	
제30조 구성 (제직회)	제직회의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하며 원로목사, 협동목사, 원로장로, 은퇴장로, 은퇴권사, 은퇴집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로 하며 협동목사, 협동장로, 원로장로, 은퇴장로, 은퇴권사, 은퇴안수집사, 협동권사, 협동안수집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사유: 목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직회 구성원 참여 확대 (협동장로,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와 원로목사 삭제.	

당회는 내규 개정안에 대해 재적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였기에, 2024년 1월 7일 공동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교회내규 제13장 73조)

2024년 1월 7일
 덕신교회 당회장 최광선 위임목사

